

서울동부지방법원 2022. 7. 20 선고 2019가단154804 판결 [사해행위취소]

전 문

원 고 주식회사 A

소송대리인 변호사 박희성, 유병연

소송대리인 B, C

피 고 1. D

2. E

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법고를

담당변호사 김석환, 노형삼, 박성진, 조재철, 최용석

소송복대리인 변호사 백국현

변 론 종 결 2022. 6. 22.

판 결 선 고 2022. 7. 20.

주 문

1. 피고 D는 원고에게 59,271,167원 및 그중 21,918,586원에 대하여 2019. 8. 17.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8%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2. 피고들 사이에 울산광역시 북구 F 대 174㎡ 중 1/3 지분에 관하여 2017. 10. 25. 체결된 매매계약을 55,714,523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한다.
3. 피고 E은 원고에게 55,714,523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%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
4.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.

5.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.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이 유

1. 인정사실

다음 각 사실은 갑 제1 내지 4호증(각 가지번호 포함)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.

가. 원고의 피고 D에 대한 양수금채권

1) 주식회사 G은 2008. 9. 1. 피고 D에게 4,000만 원(지연배상이율 연 25%)을 대출하였고, 위 대출금채권은 H 유한회사(변경전 상호 I 유한회사)를 거쳐 원고에게 양도되었고, 2018. 12. 27. 피고 D에게 위 채권양도 통지가 이루어졌다.

2) 2019. 8. 16.을 기준으로 한 원고의 피고 D에 대한 양수금채권액은 59,271,167원(= 원금 21,918,586원 + 이자, 비용 합계 37,352,581원)이다.

나. 피고 D 소유 토지의 매도 및 소유권 이전

1) 울산광역시 북구 F 대 174㎡(이하 '이 사건 토지'라 한다)는 J의 소유였는데, 2017. 4. 24. 피고 D의 채권자인 K 유한회사(이하 'K'라 한다)의 대위신청으로 이 사건 토지 중 각 1/3 지분에 관하여 2016. 12. 31.자 상속을 원인으로 피고들 및 L(형제자매 사이이다)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.

2) 2017. 10. 25. 이 사건 토지 중 피고 D 지분(1/3 지분)에 관하여 같은 일자 매매(이하 '이 사건 매매계약'이라 한다)를 원인으로 하여 피고 E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. 한편, 이 사건 매매계약의 등기부상 거래가액은 8,000만 원으로 기재되어 있다.

3) 피고 E은 2017. 10. 17. 이 사건 토지 중 L 지분에 관한 소유권을 이전받았고, 2017. 12. 28.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17. 12. 26.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M, N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.

2. 피고 D에 대한 양수금 청구 부분

위 인정사실에 의하면, 피고 D는 원고에게 위 양수금 59,271,167원 및 그중 21,918,586원에 대하여 2019. 8. 17.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 연체이율인 연 18%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.

3. 피고 E에 대한 사해행위취소 청구 부분

가. 피보전채권의 존재

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원고는 피고 D에 대하여 위 양수금채권을 가지고 있었으므로, 위 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.

나.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

1) 갑 제5호증의 기재, 이 법원의 O에 대한 신용정보제출명령에 대한 회신, 이 법원의 법원행정처에 대한 사실조회회신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 각 사실에 의하면,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일인 2017. 10. 25. 무렵 피고 D의 재산상태는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넘어서는 채무초과 상태라고 할 것이다.

① 피고 D는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일인 2017. 10. 25. 무렵 이 사건 토지의 지분 외에는 별다른 재산이 없었다.

② 이 사건 토지 중 피고 D 지분(1/3 지분)에 관한 이 사건 매매계약의 등기부상 거래가액은 8,000만 원으로 기재되어 있다.

③ 피고 D는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일인 2017. 10. 25. 무렵 이 사건 피보전채권 외에도 P, Q 주식회사, K, 원고(이 사건 양수금채무와는 또다른 채무이다)에 대하여 합계 1억 원이 넘는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다.

2)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,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할 당시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빠진 피고 D가 피고 E에게 이 사건 토지 중 피고 D 지분을 매도하고 이에 기하여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하고, 채무자인 피고 D의 사해의사가 인정되는 이상 수익자인 피고 E도 그러한 사정을 알고 있었다고 추정된다.

다. 피고 E의 주장에 대하여

피고 E은, 자신이 이 사건 토지의 공유지분권자로서 상속재산인 이 사건 토지 중 피고 D 지분에 관하여 진행된 강제경매절차에서 공유자우선매수청구권을 행사하는 대신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매매대금 일부를 경매채권자에게 직접 지급하였으며, 피고 D의 재산상태 및 채무의 존재에 대해서 알지 못하였으므로 이 사건 토지 중 피고 D 지분의 매매로 인하여 채권자인 원고를 해한다는 것을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한다.

갑 제5호증, 을 제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, 피고 D의 채권자인 K의 신청으로 이 사건 토지 중 피고 D 지분에 관하여 2017. 5. 26. 강제경매개시결정이 내려졌는데, 피고 E이 2017. 10. 25. K에 2,000만 원을 송금하였고, 이에 K가 2017. 10. 27. 위 강제경매신청을 취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, 채무자인 피고 D의 사해의사가 인정되는 이상 수익자인 피고 E도 그러한 사정을 알고 있었다고 추정되는바, 피고들 간의 관계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볼 때, 위 인정사실 및 을 제1, 3, 4(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)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추정이 번복된다고 하기 어려우므로, 피고 E의 주장은 이유 없다.

라. 취소의 범위 및 원상회복의 방법

1) 원상회복의 방법

갑 제5호증의 기재에 의하면, 이 사건 매매계약이 체결된 이후인 2018. 4. 23. 이 사건 토지에서

105㎡가 분할되어 나가고 2018. 7. 16. 다른 토지 15㎡와의 합병으로 이 사건 토지의 면적이 84㎡가 되었고, 2017. 12. 28.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17. 12. 26.자 매매를 원인으로 M, N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, 채권자는 수익자를 상대로 원물반환 대신 그 가액 상당의 배상을 구할 수 있으므로, 피고들 간의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피고 E은 원고에게 그 가액을 배상하여야 한다.

2) 취소 및 가액배상의 범위

가) 감정인 R의 시가감정결과에 의하면, 이 사건 변론종결일에 가까운 2022. 4. 25.을 기준으로 한 이 사건 토지 중 피고 D 지분의 감정평가액은 9,570만 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.

나)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가액배상을 하는 경우 그 취소 및 가액배상은 사해행위의 목적물이 가지는 담보가액과 채권자의 피보전채권액 중 적은 금액을 한도로 이루어져야 하는데, 이 사건에 있어서 이 사건 토지 중 피고 D 지분의 담보가액으로 원고 주장의 금액인 55,714,523원이 원고의 피보전채권액보다 적은 것은 계산상 명백하므로, 이 사건 매매계약의 취소범위는 55,714,523원이라 할 것이다.

마. 소결론

결국 이 사건 매매계약은 55,714,523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되어야 하고, 피고 E은 가액배상으로 원고에게 55,714,523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%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.

4. 결론

따라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,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.

판사 이재석